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74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송재혁 의원 (1명)

찬 성 자 : 이병도, 봉양순, 오한아, 김호평,
장인홍, 김종무, 이호대, 김경우,
채인묵, 이동현, 이정인, 오현정,
이세열, 임종국 의원 (14명)

1. 제안이유

- 현수막 바탕색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라는 애매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 인쇄에 사용하는 색은 대개 혼용색으로 빨강·파랑·노랑 등으로 구분되지 않아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바탕색은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은 문장의 수식관계가 옳지 않으므로 어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가. 『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강·노랑·파랑 또는 검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를 삭제하고 나머지 문장은 수식관계에 맞게 수정함 (안 제11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
항제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현수막은 창문을 막아
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p> <p>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30, 2016.3.24, 2017.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 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가림막 이용 현수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u>바탕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빨강·노랑·파랑 또는 검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u>,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p>제11조(현수막의 표시방법)</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u>바탕색</u>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u>현수막</u>은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